#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 |
|---|---|---|---|
|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장 소 | 진천군립도서관 대강의실 |
| 참석상황 | 재적위원 | 참 석 | 불 참 |
| | 34 | 25 | 9 |
| 안 건 | · 2027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분과별 심의 및 사업 선정 | | |

발 언 내 용

1. 개회 : 예산팀장

2. 인사말 : 위원장

3. 회의자료설명 및 기타사항 보고 : 예산팀장

○ (회의자료설명) 2027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지역위원회 현장 실사 결과 및 소관부서 최종 검토 내역 보고

○ (기타사항 보고)

-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신청현황은 총 138건에 약 34억 5백만원 접수되었으며, 부서 최종 검토 결과 추진가능은 90건에 약 18억 7천2백만원, 지역위원회 현장실사 결과 추진가능은 79건에 약 15억 8천 7백만원으로 검토 되었음.
- 군청 담당부서와 지역위원회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5건의 사업은 분과별로 중점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문의 후 심의 바람.
- 심의가 끝난 분과는 의결서 제출 후 퇴실 바람.

4. 안건(2027년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심의) 논의

○ **분과별 주요 심의 내용**

- (일반행정분과) : **"AI로 더 스마트한 생거진천 만들기"** 사업의 경우 당초 주민 대상 스마트폰 및 생성형 AI 기초 활용 교육을 통한 민원 작성 및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신청되었으나 ,사업부서 검토 결과 기존 정보화 부서에서 추진중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 중복성으로 인해 추진 불가능 의견이 제시됨.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단순한 정보화 기기 활용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 목적인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지역 사업 발굴과 연계하여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써 기존의 중복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있음. 사업내용은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정책발굴 만들기'** 형태로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형 제안서 작성 실습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며, 이는 서식 작성이 생소하거나 사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 및 일반 주민의 장벽을 크게 낮추어 주며, 제안서의 구체성과 소요예산추산 등 제안 안건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업을 수정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건환경분과) : 기타 특이사항 없을 경우, 지역위원 현지확인 결과와 사업부서 검토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함

- (농 정 분 과) : **"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인 10대(읍 2대, 면 각 1대) 적용 시, 관내 전체 농업인 대비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임. 일부 면지역의 경우 읍 지역보다 농업 경지 면적 및 농가 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대만 배정되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지원 대수가 부족할 경우 현장 농업인의 불만 발생 및 사업 효과성 반감이 우려되어

사업 목적 달성과 다수 농업인의 체감 수혜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량을 최소 30대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함. 다만, 사업비가 그럼 많이 증액이되므로 20대로 사업을 조정했으면 함.

**“양심화단 조성 사업”, “송림교 꽃길 조성 사업”, “이월꽃동산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세 개의 사업 발굴을 해주셨지만 사업위치를 보면 사업위치가 다 송림리 일원으로 구간이 겹치며 사업내용이 다 비슷해 보여.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심화단 조성사업”의 경우만 추진가능 하는 걸로 조정함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지속 지원하였으나 운영 관리상 민원사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상 배제대상 사업(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배제)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함.

향후 추진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신청자 또는 해당 마을 이장이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관리주체, 주기, 유지보수 방안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건화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수목 식재 시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후의 성장 및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식재하도록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년생 꽃묘 식재는 지양하고, 다년생 식물/화초 위주로 식재하여 매년 반복되는 예산 투입 및 유지관리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이 필요함.

- (건설도시분과) : 전체적인 **“CCTV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출 내역

검토 결과 현장 여건(배선거리, 설치 형태 등)에 따라 설치 공사비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일·유사 사양의 cctv 카메라 물품 단가가 개별 신청 건마다 제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물품비 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된 단가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 또한,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관리감독 체계가 사전에 철저히 수립되어야 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기준 상 **'우물·정자 등 특정 시설의 신규 설치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공공성 부족으로 배제대상 사업으로 처리되고 있음. 신규 설치가 배제되는 시설물에 대해 창호 설치 등 추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도 도입 및 배제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함. 또한 현재 관내에는 다수의 정자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특정 정자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창호를 설치해 줄 경우 타 지역 정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지속적인 유사 요구 민원 유발 우려가 커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사업을 지원 해 줄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자 창호 설치 건에 대한 것은 재검토 처리함.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공사 및 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자와 담당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준공검사 과정에 직접 참관 참여하는 체계 마련을 건의 드림. 이는 당초 주민이 제안한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설계도서 대비 현장 시설물이 적정

하게 설치되었는지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이행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분과) : 기타 특이사항 없을 경우, 지역위원 현지확인 결과와 사업부서 검토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함
- (복지경제분과) : 기타 특이사항 없을 경우, 지역위원 현지확인 결과와 사업부서 검토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함